

#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류종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2. 07. 13.

발의의원 : 류종우, 허시영,  
박소영, 윤영애,  
전경원, 임인환,  
김재우(7명)

## 1. 제안(개정)이유

민선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‘대구도시공사’를 ‘대구도시개발공사’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, 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등 미래공간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근거를 신설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목제명 변경(안 제명)

- 「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 
→ 「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명칭 변경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대구도시공사 → 대구도시개발공사

다. 사업범위에 통합 신공항 건설 등 미래공간 개발사업 추가(안 제7조)

-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사업

라. 부칙

-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등

### 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(붙임1)

나. 관계 법령 :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(붙임2)

다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##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목제명 “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대구도시공사”를 “대구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대구도시공사”를 “대구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사업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도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, 대구도시공사의 모든 재산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승계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대구도시공사”를 “대구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제5호나목 중 “대구도시공사”를 “대구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③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대구도시공사”를 “대구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④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대구도시공사”를 “대구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⑤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“대구도시공사”를 “대구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구도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(붙임1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<u>대구도시공사를</u> 설립하여 용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법인) <u>대구도시공사</u>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 을 시행한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<u>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대구도시개발공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법인) <u>대구도시개발공사</u>----- -----.</p> <p>제7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「<u>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국방·군사시설 사업</u></p> <p>16. (현행 제15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(붙임2)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19., 2019. 8. 27.>

1. “국방·군사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- 가. 군사작전, 전투준비, 교육·훈련,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
  - 나. 국방·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
  - 다. 군용 유류(油類) 및 폭발물의 저장·처리 시설
  - 라. 진지(陣地) 구축시설
  - 마.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
  - 바.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(部隊施設)과 그 구성원·군무원·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  - 사.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·복지·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2. “국방·군사시설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- 가. 국방·군사시설의 설치·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
  - 나. 국방·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

제3조(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) 국방·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로 한다.

1. 국방부 소속 기관장(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)
2. 육군참모총장, 해군참모총장,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
3.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
  - 가. 지방자치단체
  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-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**
  - 라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
  - 마. 그 밖에 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